

『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20일

나. 발 의 자 : 안주찬, 강승수, 권기만, 김근아, 김복자
김태근, 박세진, 손홍섭, 양진오, 정하영,
허 복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8일

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주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,
-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착지원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 대상 및 범위 (안 제3조 ~ 제5조)
-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사항 (안 제6조 ~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22조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 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,
-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 ~ 제2조), 지원 대상 및 범위(안 제3조 ~ 제5조),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사항(안 제6조 ~ 제15조)등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